

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86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869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167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익

변론 종결2022. 6. 23.

판결 선고2022. 7. 14.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167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5. 11. 접수 제870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만

판사유상호

판사송인경

별지